

이천시도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(안) 심사보고

2004. 12. 20(월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1차(2004. 12. 1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-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정면적을 지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(안 제1조 내지 안 제13조).
- 계획관리지역안에 일정면적을 지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지역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함(안 제1조).

-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. 다만,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지정함.(안 제2조).
-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이상 3만 제곱미터미만으로서 입지수요,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함(안 제6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소규모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정면적을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기 위하여
- 제1안 및 제2안은 목적과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였고
- 안제3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
- 안제4조 내지 제11조는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공장건축가능지역의 기준을 두었고 지정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미만 규모로 하여 개별법조사를 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뒤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으며
- 안제12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